

농어촌민박 소방시설

기본 시설

- 가. 소화기, 단독경보형 감지기,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
- 나.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유도표지를,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난유도등을 각각 설치할 것
- 라.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를 설치할 것
- ※ 다만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어촌민박사업 시설로서 2019.12.30.일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유도표지로 갈음
- ※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소방시설임

난방기[가스, 기름, 화목(나무),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가 있는 경우]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

- 가.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·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, 가스누설경보기(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,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
- 나.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. 다만,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.

소방 안전

- 가. 소화기, 피난유도등(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또는 피난유도표지(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), 단독경보형감지기, 일산화탄소 경보기, 가스누설경보기(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,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·관리할 것
- 나.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,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
- 다. 소화기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



단독경보형감지기



자동확산소화기



휴대용비상조명등



일산화탄소경보기



가스누설경보기



피난유도표지